

2023년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9.(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97)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46건(안전번호 제2023-32217호~3356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32217호는 ♣♣♣ 카페에서 더빙 연습용으로 가공된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32218호~32253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32254호~32260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의 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32261호~32273호는 블로그,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8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9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74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3221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 더빙 연습용으로 편집한 영상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신고인은 어떤 사람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임. 제3자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영상은 카페에 게시된 다른 영상에 비해 재생시간이 길어 특별히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다른 영상들은 대부분 저작물의 예고편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영상은 저작물의 앞부분을 그대로 이용한 것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영상의 원저작물은 유료로 구입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32217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보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E 위원: 저도 부결 의견임. 게시자는 저작물의 게시를 영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빙 연습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추후 이런 게시물이 다수 발견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2217호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32218호~3225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32218호~3225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32218호~3225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32254호~3226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32254호~3226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2254호~3226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32261호~32273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32261호~3227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2261호~3227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32274호~3356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길복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32275호('길복순')는 2023.03.31. 공개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220포인트에 판매중.
 ('종이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32372호('종이달')는 2023.04.10. 공개한 한국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40포인트에 판매중임.
 ('퀸메이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32443호('퀸메이커')는 2023.04.14. 공개한 한국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490포인트에 판매중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32274호~335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2274호~3356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32217호, 제2023-32218호~32253호, 제2023-32254호~32260호, 제2023-32261호~32273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2274호~3356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16.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한승원